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45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정동만 · 김선교 · 박성민
김종양 · 김태호 · 엄태영
김용태 · 구자근 · 최형두
서일준 · 김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상품에”를 “개별 상품에”로, “내용량이”를 “내용량은”으로, “한다”를 “하고,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전단”으로,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상품에</u> 표시된 양과 실제 <u>내용량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u>한다</u>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 ----- ----- ----- ----- ----- -. ----- <u>개별 상품에</u> ----- ----- <u>내용량은</u> ----- ----- -----하고, 평균적인 <u>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u>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u>	6. 제41조제1항 전단----- -----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u>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u>	<u>정량을 표시한 자</u>
-----------------------------	------------------